

전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나49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3.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소228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4. 5. 13. 긴급체포될 당시 변호사 C에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순금 31돈 목걸이(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보관하라고 하면서 전달하였는데, 이에 피고가 위 목걸이를 전달받은 후 원고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목걸이 대금 7,4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전주지방법원 2020차872호로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피고가 팔찌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대금 상당액을 구한 바 있는데, 위 지급명령 절차에서 이 사건 목걸이 대금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지급명령은 팔찌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원인은 그와 별개인 이 사건 목걸이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목걸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목걸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 판사 오창민